

(자료)

-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중 개정령
- 오물청소법 시행령 개정령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중 개정령
- 설계심사위원회규정 시행규칙중 개정령
- 1983년도 정부노임단가기준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2. 12. 3 개정)

도시계획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내지 제 4 조를 각각 제 7 조 내지 제 9 조로 한다.

제 2 조 내지 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 조 (증표 및 허가증) 법 제 5 조 제 7 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 1 호서식 및 별지 제 2 호서식에 의한다.

제 3 조 (보고)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가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위임 받아 처리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영 제 6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15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을 한 경우 이에 관한 조서 및 관계도면의 내용
2. 법 제13조 제 2 항 및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후 고시한 지형도의 내용
3. 법 제14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실효 고시의 내용
4. 법 제24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허가에 대한 승인의 내용 (설계도서등을 제외한다)
5.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및 변경등 인가의 내용(설계도서등을 제외한다)

제 4 조 (조사·측량사항등) ① 영 제11조 제 1 항 제 6 호에서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자연환경
2. 생활환경에 관한 기반시설의 현황과 전망
3. 사회개발에 관한 시설의 현황 및 전망
4. 지역경제 및 도시재정에 관한 추이 및 전망
5. 도시계획과 관련된 제반계획 및 개발상황 ② 시장(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가 영 제11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 조사·측량할 사항은 영 제11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량할 사항중 당해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다.

제 5 조 및 제 6 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 조 (조사분석사항) 법 제15조 제 2 항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 4 조 제 1 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 6 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영 제12조 제 1 항 제 7 호에서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유치원을 말한다.

제 7 조 (중전의 제 2 조) 제 1 항중 “도시계획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을 “영”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 4 호 사목중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 사목”을 “제 7 조 제 1 항 제 3 호 사목”으로 하며, 동조동항 제 5 호 다목중 “제 3 조 제 5 호 내지 제 7 호”를 “제 8 조 제 5 호 내지 제 7 호”로 하고, 동조동항 제 6 호 나목중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 및 제 5 호” “다목 및 라목”을 “제 7 조 제 1 항 제 3 호 및 제 5 호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 동조동항동호 다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용보증기금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소재 기존 공장시설을 그 부설교육훈련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제 7 조 (중전의 제 2 조) 제 2 항중 “제 3 조”를 “제 8 조”로, 별지 제 4 호서식”을 “별지 제 3 호서식”으로 하고, 동조제 3 항중 “시행령”을 “영”으로,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로 한다.

제 8 조 (중전의 제 3 조) 본문중 “시행령”을 “영”으로, 동조 제10호중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 “타목”을 “제 7 조 제 1 항 제 3 호 타목”으로, 동조 제11호중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 “사목””을 “제 7 조 제 1 항 제 3 호 사목”으로, 동조 제13호중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 라목”을 제 7 조 제 1 항 제 3 호 라목”으로, 동조 제14호중 “제 2 조 제 1 항 제 3 호 “거목” “너목” 및 “러목 내지 허목”과 동조동항 제 6 호 “바목””을 “제 7 조 제 1 항 제 3 호 거목·너목 및 러목 내지 허목과 동조동항 제 6 호 바목”으로 한다.

제 9 조 (중전의 제 4 조) 본문중 “시행령”을 “영”으로, 동조 제 2 호중 “300%”를 “300퍼센트”로 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시행자지정의 공고) 법 제23조 제 1 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인 경우 또는 동조 제 3 항 및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이, 법 제23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협의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시장·군수가 법 제23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제11조 (사업시행허가내용의 고지) 시장·군수는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5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여비는 2급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제13조 (증표) 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신 분 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진) 2cm×2.5cm
위 사람은 도시계획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측량등을 할수 있는 자임을 증명함.	
유효기간 19 . . . 부터 19 . . . 까지	
년 월 일	
시 장	
군 수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검사공무원신분증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 진) 2cm×2.5cm
위 사람은 도시계획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업무 또는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건설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제 호	
허 가 증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위치또는장소 : 허가내용 : 기 간 : 19 . . . 부터 19 . . . 까지	
도시계획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조사·측량등을 하기 위하여 토지의 출입등을 허가함	
19 . . .	
시 장	
군 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중개정령 (1982. 12. 7 개정)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 2 (군사시설보호구역등 안의 건축물) 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 또는 해·공군기지(보위구역을 포함한다) 안의 건축물로서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은 군사시설보호법·해군기지법 및 공군기지법에 의한 구역 또는 기지의 건축물로

서 시장·군수가 관할 부대장등과 협의하여 당해 구역 또는 기지의 지정목적에 위배된 것으로 인정한 건축물로 한다.

제5조 제3항중 “1982년 8월31일”을 “1983년 1월31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중 “당해 건축물의 용도별가중치·규모별가중치·구조별가중치(주요구조별가중치 및 지붕구조별가중치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별가중치(대상지역별가중치 및 용도지역별가중치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당해 건축물의 용도별가중치·규모별가중치·구조별가중치(주요구조별가중치 및 지붕구조별가중치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별가중치(대상지역별가중치 및 용도지역별가중치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를 모두 곱한 금액”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중 “당해 건축물의 용도별가중치·규모별가중치·구조별가중치 및 지역별가중치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당해 건축물의 용도별가중치·규모별가중치·구조별가중치 및 지역별가중치를 모두 곱한 금액”으로 하며, 동조 제3항중 “당해 건축물의 용도별가중치·규모별가중치·구조별가중치 및 지역별가중치의 10분의 9로 한다.”를 “당해 건축물의 용도별가중치·규모별가중치·구조별가중치 및 지역별가중치의 각각의 10분의 7로 한다.”로 한다. [별표] 과태료산정기준중 2. 규모별가중치란의 비고란 “()안의 것은 비주거용. 무허가건축물인 경우를 말한다.”를 “()안의 것은 비주거용 무허가건축물과 주거용 위법시공건축물(165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로 하고, 동표중 3. 구조별가중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구조별 가중치

가. 주요구조별 가중치

번호	주요구조별	가중치
1	석조	1.00
2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피·씨(P·C)조	0.80
3	철골조 보강콘크리트블록조	0.75
4	연와조	0.70
5	시멘트벽돌조	0.55
6	목조	0.50
7	시멘트블록조	0.45
8	석회 및 흙벽돌조 흙벽돌조	0.25
9	돌담 및 토담조	0.15

나. 지붕구조별 가중치

번호	지붕구조별	가중치
1	스라브	1.00
2	토기와 유리	0.75

3	시멘트기와	0.70
4	스레이트	0.65
5	함석	0.60
6	자연석	0.55
7	초가	0.35
8	기타	0.15

부 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미 납부한 과태료등에 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는 이 영 시행전에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가 납부한 과태료의 금액이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과태료의 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아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으로 다시 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 特定建築物整理에 관한 特別措置法施行令 改正理由

종전에는 軍事施設保護區域 또는 海·空軍基地안에 있는 無許可建築物 또는 違法施工建築物은 모두 法에 의한 整理對象에서 제외되어 陽性化될 수 없도록 規定하고 있는바, 이는 軍事施設保護法이나 海軍基地法 및 空軍基地法이 軍事施設保護區域 또는 海·空軍基地안에서도 建築物의 新築 및 増築을 관할部隊長등과의 協議를 거쳐 市長·郡守가 許可할 수 있도록 許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위의 區域 또는 基地안의 無許可建築物 또는 違法施工建築物의 陽性化를 일률적으로 禁止하는 것은 均衡을 잃은 것일 뿐 아니라 法の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軍事施設保護區域 또는 海·空軍基地안의 無許可建築物 또는 違法施工建築物중 整理對象에서 제외되는 建築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過怠料算定基準을 調整하여 國民의 負擔을 輕減하도록 하며, 現行規定의 運營上 나타난 未備點을 整備·補完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가. 軍事施設保護區域 또는 海·空軍基地안의 無許可建築物 또는 違法施工建築物중 整理對象에서 제외되는 建築物의 범위를 市長·郡守가 관할部隊長등과의 協議를 거쳐 同 區域 또는 基地의 指定目的에 違背되는 것으로 인정한 建築物로 限定함(令 第2條의 2).

나. 特定建築物중 無許可建築物 및 國家施策事業으로 建築 또는 改良한 建築物에 대하여는 市長·郡守가 작성하는 現場調査書로 申告에 適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그 現場調査書의 作成期限을 1982년 8월 31日에서 1983년 1월 31日로 延長함(令 第5條 第3項).

다. 特定建築物에 대한 竣工檢査畢證을 交付할 때에 賦課하는 過怠料의 算定基準중 構造別加重值를 下向調整하되, 종전의 基準에 의하여 이미 納付한 過怠料와 새로운 基準에 의한 過怠料와의 差額은 이를 遠給하도록 함(令 別表 및 附則第2項). <법제처 제공>

오물청소법시행령개정령 (1982. 12. 10개정)

오물청소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영은 오물청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오물처리담당요원의 교육) ① 환경청장은 오물처리담당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교육은 환경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3 조 (오물투기금지구역) 법 제 8 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물투기금지구역”이라 함은 다음의 구역을 말한다.

1. 해안 및 항만법에 의한 항만구역으로부터 1만미터 이내의 해역
2. 수산물의 생산 또는 보존을 위하여 환경청장이 수산청장과 협의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
3. 육로변 또는 관광지로서 환경청장이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
4.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환경청장이 문화공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

제 4 조 (오물처리업의 허가가 필요한 지역) 법 제 11 조 제 1 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1. 제 3 조 제 2 호 내지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지역
2. 주한 외국군의 주둔지역

제 5 조 (오수정화시설 설치지역등) ① 법 제 1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지역은 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청소지역과 주택건설촉진법 제 3 조 제 3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한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으로 우수·오수분리식하수도가 설치된 지역과 기타 환경청장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역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② 법 제 1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건물 기타 시설의 규모는 건축연면적(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2 동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1 천6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 6 조 (분뇨정화조 설계·시공업자의 영업지역) 법 제 19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정화조의 설계·시공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지역은 당해 등록관청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 7 조 (권한의 위임) 법 제 1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청장의 권한중 매립지의 면적이 1 만제곱미터미만인 쓰레기종말처리시설의 설치허가 및 승인에 관한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 8 조 (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汚物清掃法施行令 改正理由

汚物清掃法이 改正(1982. 4. 2, 法律 第3,554號)됨에 따라 그 施行에 필요한 事項을 訂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 가. 汚物處理擔當要員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이들 要員에 대하여 필요한 教育을 實施할 수 있도록함(令 第 2 條)
- 나. 汚水淨化施設을 設置하여야 할 對象地域과 建物등의 規模를 訂함(令 第 5 條).
- 다. 糞尿淨化槽 設計·施工業者의 營業地域을 登錄官廳의 官轄區域으로 하여 이들 業體가 設計·施工한 施設에 대하여 事後管理의 철저를 기할 수 있게 함(令 第 6 條).

(법제처 제공)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 <개정82. 12. 18>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8 조 제 1 항제 2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술자격취득자를 고용한 후 1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갑종근로소득세납부 실적증명서의 제출이 불가능한 때에는 고용계약서 사본으로 갈음하되, 등록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당해 기술자격취득자의 갑종근로소득세납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0 조 제 3 항 제 3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입주를 희망하는 자가 없거나 사업주체가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전원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1 조 제 1 항 단서중 “및 제 5 조”를 삭제하고, 동조동항 제 2 호 및 제 5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동항 제 3 호를 삭제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의 변경중 그 설치기준 이상으로의 변경(위치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

5.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주택자재생산업등록기준세목중 2. 시멘트 가공제품(시멘트벽돌·시멘트블록·시멘트 기와) 생산업의 등록기준세목의 다. 기타 시설란중 “3,300평방미터이상.”을 “3천300제곱미터(보일러실을 포함하여 99제곱미터이상의 증기양생실과 1톤 이상의 보일러 1대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1천980제곱미터) 이상.”으로, “1,650평방미터”를 “1천650제곱미터”로 하고, 동표중 “평방미터”를 “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7]중 “평방센티미터”를 “제곱센티미터”로 하고, 동표 제17호란중 “평방미터이상”을 “제곱센티미터이상”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할 경우 제출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자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중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등을 변경한 것(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에 관한 보고를 한 것에 한한다)은 제21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변경한 것으로 본다.

[별표 2] 국가등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할 경우의 제출도서

도서의종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위치도	임의	1. 대지의 위치(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도면에 표시한다) 2. 대지인근에 학교·의료시설·동사무소·파출소·우체국·판매시설·공중목욕탕·공공운동장이 있을 경우 그 위치
현황도	임의	1. 대지의 위치 및 경계 2. 대지안의 도시계획시설 3. 토지이용 및 여러시설물의 현황 4. 도로망 5. 주요경관요소 6. 자연지형등

		7. 소음발생원(철도·고속도로·공장등)의 위치
배치도	$\frac{1}{600} \sim \frac{1}{1,200}$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와 접하는 도로의위치 및 폭과 대지의 경계선 3. 건축선 및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4. 건축물 서로간의 거리 5. 안내표지판 6. 단지안의 도로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7.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면적 또는 규모 8. 담·옹벽·우물·안내표지판·오물정화조·배수시설기타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의 위치 9. 주차시설
대지조성계획도	임의	1. 축척 및 방위 2. 토지의 굴착부분의 정리계획 3. 대지의 종·횡단면(성토 및 절토부분의 표시를 포함한다) 4. 대지조성표고 5. 차도 및 보도의 포장계획
조경도	$\frac{1}{50} \sim \frac{1}{1,200}$	1. 축척 2. 식수평면계획·식수면적 3. 수종·수형·수목의 규격 4. 어린이놀이터(어린이놀이터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시설의 종류·수량·위치등을 포함한다) 5. 휴게시설 6. 기타 조경시설물의 배치
각층평면도	$\frac{1}{50} \sim \frac{1}{200}$	1. 축척 2. 각실의 용도 3. 벽의 위치·재료 및 두께 4. 개구부 및 방화문의위치 5. 계단의 위치 및 폭 6. 복도의 위치 및 폭 7. 승강기 및 승강상의 위치 및 폭 8. 건물의 폭 길이
입면도	$\frac{1}{20} \sim \frac{1}{200}$	1. 축척 2. 거실의 바닥높이, 각층의 반자높이 및 건축물의 높이 3. 지붕·천정·벽·기둥·바닥의 구조(단열재료 및 그 열관류율의 값을 포함한다)

		4. 세대간 사잇벽의 구조(재료·두께·차음성능의 값을 포함한다) 5. 내화구조의 기둥·벽 및 바닥의 구조 6. 처마 및 방화문의 구조 7. 난간의 구조 및 높이 8. 계단 또는 경사로의 구조 9. 변소 및 욕실의 부분상세 10. 낙수구 11. 우편함 12. 다스트슈트·저장소 및 상부 악취배기시설
마 감 표		바닥·벽·천정등 건축물 안팎의 각 부분의 마감재료

창 호 도	임 의	1. 축 척 2. 창문의 재료 및 규격
소방및피난 설비도	임 의	소방법등의 규정에 의한 관 계시설
냉·난방설 비도	임 의	1. 축 척 2. 배관계통도 3. 냉·난방시설의 위치 4. 난방열량측정계기 또는 난방온도조절장치
전기설비도	임 의	1. 세대별 전력용량 2. 적산전력계의 위치 3. 배선도 4. 전등 및 콘센트등의위치 5. 매지안의 옥외전선 6. 보안등 7. 공청안테나

설계심사위원회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1983. 1. 6 개정)

설계심사위원회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 조의 2 (기본설계 등의 공고) 건설부장관은 규정 제 2 조제 3 호의 기본설계의 내용과 규정 제 3 조제 1 항제 1 호 나목의 특수시설공사의 범위를 각각 관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 3 조제 1 항중 “규정 제 3 조제 1 항제 1 호”를 “규정 제 3 조제 1 항제 1 호 및 동조 제 2 항제 1 호”로 하고, 동항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설물의 평면계획·배치, 구조선택 및 단면결정 등의 타당성 여부

제 3 조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위원회가 규정 제 3 조제 1 항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을 위한 설계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대형공사계약에 관한 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회계연도 초에 공고하여야 할 대형공사에 대한 대안입찰의 타당성 여부

2. 대안입찰을 위한 설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대안입찰을 위한 설계의 기본이 되는 원안설계와 대안입찰을 위한 설계의 기준 및 세부지침 등

나. 공종대체의 타당성 여부

다. 기본방침(기본계획, 설계기준 및 세부지침 등)과의 합치 여부

라. 원안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지는가의 여부

마. 기타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사항과의 합치 여부

제 3 조제 3 항중 “설계·시공일괄입찰설계”를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위한 설계”로 하고, 동항 제 2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위한 설계(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를 말한다)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위한 설계에 관한 기본계획·설계기준 및 설계지침 등

나. 기본계획·설계기준 및 설계지침 등과의 합치 여부

다. 기타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사항과의 합치 여부

제 3 조제 4 항중 “설계·시공일괄입찰설계”를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위한 설계”로 하여 이를 제 5 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 4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법의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인 경우에는 설계변경금액이 1억원 미만이라도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 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 조 (심의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 1 호서식의 설계심의 요청서에 별지 제 2 호서식의 공사설명서와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건설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미리 정하여 공고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에는 건설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규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심의하여야 할 공사계획은 별지 제 3 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 월 20 일까지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제 1 항 및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 3 항을 제 4 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의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설계도서를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장 또는 지방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의 개최 전에 분야별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사전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검토를 의뢰받은 위원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은 검토한 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중앙위원장 또는 지방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 위원회의 위원·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실무적인 검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자료의 보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된 설계도서는 심의완료 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시공평가등) ① 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시공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각각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단원은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관계공무원중에서 각 기술분야별로 단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② 평가단의 단장은 시설공사의 분야별로 시공에 대한 개별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설공사와 시공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규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심의를 거친 공사로 한다.
- ④ 평가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중앙위원회의 지적사항의 시정 여부의 확인
 - 2. 공사관리상태의 확인
 - 3. 새로운 공법의 개발 및 그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의 확인
 - 4. 설계의 변경 및 그 처리의 확인
 - 5. 현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⑤ 평가단의 평가기준은 건설부장관이 정한 평가요령서에 의한다.
- ⑥ 평가단의 평가는 공사의 시공기간중에 실시한다. 다만, 평가단의 단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시공이 완료된 후에 당해 공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 ⑦ 평가단의 단장은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내지 제18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중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3년도 정부노임단가기준

(재무부회계1210-3992호 83. 1. 1시행)

● 적용요령

- 1. 이 노임단가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시 적용할 노무비의 기준금액을 설정한 것이다.
- 2. 이 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3. 이 노임단가는 기본금액을 표시한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는 이 노임단가를 기준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한다. 다만, 제조부문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거 1월을 25일로 계상하여 산정된 단가이다.
- 4.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처에 등록한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를 특별히 사

- 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취지에 따라 이 노임단가의 100분의 10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이 노임단가에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 5.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직종은 이 기준 중 유사한 직종의 단가에 의할 수 있다.
- 6. 이 노임기준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협의를 받아 이를 조정한다.
- 7. 도서지역 노임단가의 적용지역은 도서지역 일원(제주도, 울릉도포함)으로 한다.
- 8. 이 기준은 1983. 1. 1. 부터 적용한다.

1. 공사부문

부 문 별	직종번호	직 종 명	단 가
공사부문	1	경 부	7,800
	2	도 목 수	11,430
	3	조 선 목 공	9,800

부 문 별	직종번호	직 종 명	단 가
	4	건 축 목 공	9,410
	5	형 틀 목 공	9,010
	6	창 호 목 공	9,600
	7	동 발 목 공 (터 널)	9,620
	8	철 골 공	9,300
	9	철 공	8,810
	10	철 근 공	8,930
	11	제 관 공	9,210
	12	강 관 공	8,680
	13	대 장 공	7,230
	14	샷 다 공	9,700
	15	샷 슈 공	9,360
	16	철 단 공	8,100
	17	석 공	10,020
	18	할 석 공	10,180
	19	특수비계공(15m 이상)	10,750
	20	비 계 공	9,500
	21	동 발 공(터 널)	9,680
	22	제 철 축 로 공	15,470
	23	조 적 공	8,960
	24	벽돌 (부 력) 제 작 공	7,960
	25	연 돌 공	8,350
	26	미 장 공	9,240
	27	방 수 공	8,750
	28	타 일 공	9,360
	29	출 눈 공	8,560
	30	연 마 공(손 갈 기)	8,530
	31	연 마 공(기 계 갈 기)	8,690
	32	콘 크 리 트 공	7,910
공사부문	33	양 생 공	6,610
	34	바 이 브 레 타 공	7,450
	35	보 이 라 공	9,870
	36	냉 동 공	8,590
	37	배 관 공	8,670
	38	온 돌 공	8,750
	39	위 생 공	8,290
	40	보 온 공	8,080
	41	도 장 공	8,990
	42	계 령 공	6,320
	43	내 장 공	8,790
	44	돛 자 리 공	8,070
	45	도 배 공	8,900
	46	아 스 타 일 공	9,410
	47	개 와 공	9,400
	48	스 레 트 공	8,780
	49	화 약 취 급 공	11,420
	50	착 암 공	9,270
	51	보 안 공	6,760
	52	포 장 공	8,560
	53	포 실 공	9,370
	54	케 도 공(철 도)	9,880

부 문 별	직종번호	직 종 명	단 가
	55	케 도 공(일 반)	6,900
	56	케 도 용 접 공(철 도)	11,000
	57	잠 수 부(4 인조)	50,990
	58	잠 함 공	12,330
	59	보 링 공(지 질 조 사)	7,990
	60	우 물 공	8,000
	61	영 립 기 사	10,790
	62	조 원 공	8,780
	63	벌 채 지 도 인 부	6,880
	64	벌 목 부	7,630
	65	조 립 인 부	7,770
	66	프 랜 트 기 계 설 치 공	11,970
	67	" 용 접 공	9,790
	68	" 배 관 공	9,940
	69	" 제 관 공	10,150
	70	시 공 측 량 사	11,260
	71	시 공 측 량 사 조 수	6,380
	72	측 부	5,280
	73	검 조 부	4,440
	74	송 전 전 공	15,580
	75	배 전 전 공	12,540
	76	프 랜 트 전 공	11,480
	77	내 선 전 공	9,910
공사부문	78	특고압케이블전공	16,100
	79	고압케이블전공	13,020
	80	저압케이블전공	10,970
	81	철 도 신 호 공	9,930
	82	계 장 공	9,550
	83	전 기 공 사 기 사 1 급	15,320
	84	" 2 급	11,600
	85	통 신 외 선 공	11,020
	86	" 설 비 공	10,290
	87	" 내 선 공	9,810
	88	" 케 이 블 공	13,110
	89	무 선 안 테 나 공	12,690
	90	통 신 기 사 1 급	15,670
	91	" 2 급	12,720
	92	통 신 기 능 사	10,950
	93	도 십 장	11,350
	94	십 장	8,740
	95	목 도	9,400
	96	연 돌 소 제 부	6,450
	97	숙 련 공 의 조 공	6,330
	98	특 별 인 부	7,210
	99	보 통 인 부	5,290
	100	여 자 인 부	3,420
	101	중 기 운 전 기 사	10,010
	102	운 전 사(운 반 차)	9,430
	103	" (기 계)	8,890
	104	중 기 운 전 조 수	6,530
	105	고 급 선 원	11,710

부 문 별	직종번호	직 종 명	단 가
공사부문	106	보 통 선 원	7,840
	107	선 부	7,260
	108	준 설 선 선 장	12,320
	109	" 기관장	11,460
	110	" 기관사	9,310
	111	" 운전사	9,110
	112	" 전기사	8,940
	113	사 공(배포함)	10,920
	114	기 계 설 치 공	8,910
	115	기 계 공	8,630
	116	선 반 공	8,440
	117	정 비 공	9,180
	118	벨트콘베어작업공(남)	6,640
	119	" (여)	3,500
	120	현 도 사	10,940
	121	제 도 사	9,170
	122	미 술 사	7,270
	123	시 험 사 1 급	12,340
	124	시 험 사 2 급	10,750
	125	시 험 사 3 급	9,070
	126	시 험 사 4 급	8,020
	127	시 험 보 조 수	5,870
	128	비 파 피 시 험 사	9,530
	129	안 전 관 리 기 사 1 급	13,860
	130	안 전 관 리 기 사 2 급	9,700
	131	마 부(우 마 차 포 함)	16,330
	132	제 재 공	9,320
	133	유 리 공	9,110
	134	함 석 공	8,680
	135	용 집 공	8,910
	136	리 벳 공	10,280
	137	빠 데 도 포 공	7,990
	138	루 핑 공	7,730

부 문 별	직종번호	직 종 명	단 가
	15	보 통 인 부	6,600
	16	여 자 인 부	4,120
	17	중 기 운 전 기 사	12,090
	18	운 전 수(운반차)	9,740
	19	중 기 운 전 조 수	8,160
	20	고 급 선 원	11,110
	21	보 통 선 원	7,780

2. 제조부문

부 문 별	직종번호	직 종 명	단 가
제조부문	1	기 계 설 계 사	8,670
	2	회 로 설 계 사	9,770
	3	제 도 사	6,280
	4	현 도 사	6,180
	5	마 킹 공	4,780
	6	철 물 재 단 사	6,680
	7	철 물 절 단 공	4,970
	8	산 소 절 단 공	5,340
	9	회 전 쇠 톱 공	4,880
	10	금 속 쇠 톱 공	4,290
	11	모 형 절 단 공	4,560
	12	가 위 절 단 공	3,340
	13	단 금 절 단 공	4,320
	14	초 음 파 절 단 공	4,010
	15	방 전 절 단 공	5,300
	16	사 링 공	4,940
	17	프 레 스 공	4,440
	18	프 레 스 조 공	3,470
	19	밀 링 공	5,070
	20	쉐 파 공	5,200
	21	흡 핑 공	4,900
	22	로 구 로 공	4,620
	23	드 릴 공	4,600
	24	태 핑 공	4,160
	25	보 링 공	5,750
	26	자 동 선 반 공	5,520
	27	수 동 선 반 공	5,300
	28	프 레 나 공	5,270
	29	스 롯 타 공	5,420
	30	불 반 공	4,460
	31	강 판 공	4,700
	32	판 금 공	5,200
	33	함 석 공	5,880
	34	문 자 조 각 기 공	4,970
	35	모 형 조 각 기 공	5,045
	36	3 본 로 라 공	5,600
	37	벤 링 머 셴 공	4,370
	38	절 곡 공	4,790
	39	수 동 교 정 공	5,070
	40	바 란 스 머 셴 공	5,310

● 도 서 지 역

부 문 별	직종번호	직 종 명	단 가
공사부문	1	건 축 목 공	11,980
	2	형 틀 목 공	10,400
	3	철 근 공	9,420
	4	조 적 공	9,370
	5	미 장 공	11,010
	6	방 수 공	10,050
	7	타 일 공	11,660
	8	연 마 공(기 계)	10,530
	9	콘 크 리 트 공	8,580
	10	화 약 취 급 공	13,330
	11	착 암 공	10,760
	12	포 장 공	10,210
	13	잠 수 부(4인조)	62,710
	14	특 별 인 부	7,970

부 문 별	직종번호	직 종 명	단 가
제조부문	41	요 철 공	4,160
	42	열 처 리 공	5,160
	43	용 해 공	5,140
	44	금 형 공	5,820
	45	목 형 공	5,980
	46	주 물 공	5,190
	47	다 이 카 스 트 공	5,160
	48	단 조 공	5,660
	49	압 연 공	5,650
	50	인 발 공	4,440
	51	압 출 공	5,340
	52	합 금 공	5,160
	53	제 금 공	4,710
	54	연 화 공	5,380
	55	신 선 공	4,230
	56	연 선 공	3,760
	57	절 연 공	4,410
	58	연 합 공	4,550
	59	대 연 공	4,030
	60	테 이 핑 공	4,730
	61	케 이 블 건 조 공	4,060
	62	케 이 블 제 조 공	3,880
	63	피 복 공	4,280
	64	권 취 공	4,010
	65	구 목 공	4,340
	66	리 벧 공	4,210
	67	전 기 용 접 공	5,030
	68	가 스 용 접 공	5,250
	69	뿔 납 용 접 공	4,310
	70	접 접 공	3,600
	71	권 선 공	4,250
	72	랍 핑 공	3,690
	73	레 이 저 광 선 공	6,630
	74	양 극 처 리 공	3,470
	75	합 성 수 지 피 막 공	4,750
	76	진 공 침 적 합 침 공	3,730
	77	고 체 연 료 제 조 공	3,950
	78	일 반 화 학 공	5,460
	79	일 반 화 학 조 공	4,550
	80	조 성 화 학 공	5,500
	81	조 성 화 학 조 공	4,340
82	고 무 제 품 제 조 공	3,930	
83	도 차 기 및 애 자 공	5,870	
84	요 업 공	4,960	
85	유 리 제 품 제 조 공	5,210	
86	그 라 인 다 공	4,290	
87	지 석 연 마 공	4,660	
88	사 지 공	3,340	
89	세 척 공	4,310	
제조부문	90	빠 후 공	5,160
	91	컴 파 운 드 연 마 공	5,030

부 문 별	직종번호	직 종 별	단 가	
제조부문	92	전 해 연 마 공	4,760	
	93	화 학 연 마 공	4,630	
	94	호 닝 공	4,810	
	95	도 장 공(취 부)	5,170	
	96	도 장 공(붓 칠)	3,950	
	97	목 공 도 장 공	5,300	
	98	빠 데 도 포 공	4,710	
	100	배 선 공	5,980	
	101	전 기 도 금 공	4,080	
	102	침 적 도 금 공	4,270	
	103	사 출 공(인제선)	4,220	
	104	성 형 공(물 딩)	4,530	
	105	압 출 공(인스트루손)	4,910	
	106	제 재 공	5,530	
	107	제 재 조 공	3,840	
	108	정 척 공	3,860	
	109	제 재 기 계 운 전 공	5,280	
	110	목 재 건 조 기 계 공	4,410	
	111	합 판 제 조 공	3,160	
	112	가 구 공	5,200	
	113	목 공 및 유 리 공	5,420	
	114	벨트콘베어작업공(남)	5,580	
	115	벨트콘베어조립공(여)	3,770	
	116	부 품 조 립 공	3,690	
	117	전 자 제 품 조 립 공	3,370	
	118	약 전 기 계 조 립 공	4,950	
	119	강 전 기 계 조 립 공	5,650	
	120	경 기 계 조 립 공	4,420	
	121	중 기 계 조 립 공	5,540	
	122	부 품 시 험 공	4,980	
	123	제 품 시 험 공	5,230	
	124	부 품 조 정 공	4,490	
	125	제 품 조 정 공	4,640	
	126	부 품 검 사 공	4,690	
	127	제 품 검 사 공	3,950	
	128	물 품 포 장 공	3,640	
	129	철 강 포 장 공	4,700	
	130	도 안 공	7,290	
	131	제 본 공 (남)	5,440	
	132	" (여)	3,400	
	133	공 판 인 쇄 공	6,010	
	134	읍 셋 인 쇄 공	6,200	
	135	활 판 인 쇄 공	5,780	
	제조부문	136	사 진 조 판 공	6,710
		137	인 쇄 동 판 제 조 공	5,920
		138	인 쇄 연 판 제 조 공	5,420
		139	식 자 공	5,750
		140	문 선 공	5,740
		141	필 경 사	7,510
		142	공 판 타 자 수	6,050
		143	프 린 트 인 쇄 공	5,510

부 문 별	직종번호	직 종 명	단 가
	144	교 정 사	7,240
	145	지 류 재 단 공	5,000
	146	직 물 재 단 사	8,300
	147	직 물 재 단 공	3,820
	148	상 침 공	3,190
	149	하 침 공	2,660
	150	이 본 침 공	3,830
	151	오 바 로 그 공	3,000
	152	깅 검 기 공	2,810
	153	인 타 로 그 공	2,810
	154	스 냅 공	2,610
	155	연 단 공	3,180
	156	직 포 공 (여)	3,480
	157	침 염 공	3,320
	158	연 사 공 (여)	3,360
	159	정 경 공 (여)	3,200
	160	염 직 공 (여)	4,240
	161	관 건 공 (여)	2,930
	162	재 봉 기 계 사	4,920
	163	방 직 기 계 보 전 공	5,750
	164	편 직 공	3,580
	165	황 편 공	5,300
	166	제 화 공	4,300
	167	피 혁 공	3,120
	168	빵, 과자및식품류제조공(남)	4,620
	169	" (여)	2,910
	170	조 리 사	4,880
	171	영 양 사	6,090

부 문 별	직종번호	직 종 명	단 가
	172	남 자 인 부	4,320
	173	여 자 인 부	2,670
	174	십 장	6,130
	175	양 곡 처 리 공 (남)	6,200
	176	컴 퓨 터 운 전 사	6,250
	177	기 계 기 술 공	6,730
	178	보 선 공	6,080
	179	차 량 정 비 공	6,680
	180	기 계 정 비 공	6,150
제조부문	181	안 전 관 리 사	9,250
	182	품 질 관 리 사	10,210
	183	품 질 관 리 공	4,870
	184	다 듦 질 공	4,490
	185	중 기 운 전 사	6,450
	186	컴 퓨 터 S / W 기사	13,010
	187	" H / W 기사	13,910
	188	통 신 기 계 조 립 공	3,500
	189	컴 퓨 터 키 편 치 공	5,110
	190	통 신 외 선 공	6,670
	191	통 신 내 선 공	6,110
	192	무 선 안 테 나 공	6,250
	193	통 신 기 사 1 급	12,620
	194	통 신 기 사 2 급	10,070
	195	통 신 기 능 사	5,660
	196	복 제 포 장 공	4,560
	197	양 곡 처 리 공(여)	3,530
	198	복 도	4,780

건축설계보조원취업안내

본회 서울지부에서는 회원사무소에서 일할 설계보조원 취업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신고 접수합니다.

- 구비서류 / 이력서 · 경력서 각 1 통
 - 마 감 / 매월 20일 까지
 - 제 출 처 /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지부 사무국
- TEL 723-6258·8059